	구 분		
열람.서명자	운영지원과장	김필래	2060号)
	김성순 위원	김성순	小人
확 인 자	보존서비스과장	원종관	是多世
작성 자	보존서비스과 기록연구사	서수련	AMERA

## 2021년 제3차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2021년 9월

행**정국** (서울기록원)

## 2021년 제3차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9. 15.(수) 14:00~16:00

◆ 장 소 : 온라인 영상회의

◆ 참 석: 8명

- 위촉위원(4): 이상미(위원장), 김성순, 김희란, 박종연

- 내부위원(3): 김은실(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장).

원종관(보존서비스과장), 김필래(운영지원과장)

- 배 석 자(1): 서수련(간사)

#### ◆ 안 건

〈안건1〉 농지분배 관련 지적기록의 공개여부

(안건2) 국제협력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안건3〉인·허가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안건4〉 공공청사 건립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 ◆ 회의결과

### 〈안건1〉가결

-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지가사정조서, 보상대장, 상환증서발급 기록: 공개(개인의 성명,주소 포함)
- 지가증권 관계 문서: 부분공개(6호)
- 개인이 제출한 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본인,상속자 등 관련 당사자에 한하여 공개

### 〈안건2〉수정가결

- 부분공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6호)
- 단, 국제회의, 행사 등에 참여한 개인의 성명은 공개 가능

### 〈안건3〉가결

- 30년 경과: 부분공개(6호)
- 30년 미경과: 부분공개(6호,7호)

〈안건4〉가결

○ 부분공개(6호.3호)

### □ 주요 발언 내용

### ▶ 변경된 당연직 위원 소개 및 인사

### 〈위원〉

○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어서 하게 되었음. 새로운 분야이니 열심히 잘 들어보고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는 쪽으로 힘을 보태겠음.

### ▶ 개회

### 〈위원장〉

- 7명의 위원 모두가 참석하여 2021년 제3차 기록물 공개심의회 개의됨.
- 안건 및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에 대해 간사의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을 작성한 의결서에 대해 위원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음. 회의 종료후 이메일을 통해 심의의결서의 위원별 서명을 받도록 하겠음

### ▶ 〈안건1: 농지분배 관련 지적기록의 공개여부〉심의

### 〈간사〉

- O **안건 설명** ※ 붙임 안건 참고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기록원 검토의견과 거의 같은 의견을 주셨음. 생산 30년이 경과한데다, 개인의 주소,성명이 개인의 사생활을 크게 침해하거나 민감한 정보로 보기는 어렵고, 권리구제 측면에서 전부공개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음.

### 〈위원장〉

- 사전검토의견을 보니 위원님들 의견이 모두 같은 것 같음.질문이 없으시다면 가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동의하시는지. (일동 동의)
- 지주별 농지확인일람표, 지가사정조서, 보상대장은 공개, 지가증권관계는 부분공개로 의견 주셨음.
-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가결 하겠음. 동의하시는지. (일동 동의)

### ▶ 〈안건2: 국제협력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심의

### 〈간사〉

- O **안건 설명** ※ 붙임 안건 참고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해주셨음
  - 다만, ○○○위원님은 민간인이라도 국제협력 업무에 참여했으므로 참가자의 성명은 공개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주셨음. ○○○위원님도 공무로 인한 정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성명도 공개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음.
  - 민간인이 포함된 경우에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주셨으면 함

### 〈위원장〉

○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발언해주시기 바람

### 〈위원〉

○ ○○○ 위원님은 참가자 성명은 공개해도 괜찮다는 의견이시고 저도 같은 의견임

#### 〈위원〉

○ 지금도 국제협력 관련 회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체 참여자 명단 등은 계획 단계부터 공개되는 것 아닌지?

#### 〈간사〉

○ 기본적으로 공적인 업무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여기에서는 합창단원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자 개인이 행사의 자격으로 포함이 되었다기 보다 합창단원의 일원으로 포함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성명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 〈위원〉

○ 그러면 그 명단에는 합창단의 명칭이 별도로 있다는 것인지

### 〈간사〉

○ 서울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이며, 그 명단에 성명, 학교, 학년,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생년월일,학교,학년 정보만 가리면 될지. 성명까지 가리는게 맞을지의 문제임

### 〈위원〉

○ 만약에 성명을 공개하는 경우, 성명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야 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 합창단과 이름이 합쳐지면 어느 합창단의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경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 〈간사〉

O 네.

#### 〈위원〉

○ 이 합창단을 보니 초등학생인데, 개인으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굳이 이름을 다 가릴 필요가 있을까 싶음.

#### 〈위원〉

- 비슷한 사례가 KOICA에 있는 것 같음. 파독 광부 명단 같은 것을 이름까지는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름까지는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음.
- 다른 영문 첨부문서에서는 주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름 부분은 공개로 하되 그 외의 모든 개인정보는 비공개하면 될 것 같음. 정보 원하시는 분이 찾는 경우 나중에 제공해주면 될 것임.

### 〈위원〉

- 이름은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름 외의 정보는 비공개 했다가 개별 사안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그때 판단하면 될 것임.
- 가면 안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훗날에 공적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름 정도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음

### 〈위원장〉

- 동의하시는지 (일동 동의)
- 국제협력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와 관련하여 부분공개하며, 성명은 공개하되 다른 개인정보는 가리고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음.
- 찬성하시는지 (일동 동의)
- ▶ 〈안건3: 인·허가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심의

#### 〈간사〉

- O **안건 설명** ※ 붙임 안건 참고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대부분 동일한 의견을 주셨고, 다만 ○○○ 위원님께서는 비공개대상정보 중에서 성명은 공개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을 주셨음

### 〈위원장〉

-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발언해주시기 바람
- ○○○ 위원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 〈위원〉

○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렸음. 인허가 관련 기록물이 한 철에 들어가면 주민등록등본 등 등초본이 상당히 끼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가능하면 이런걸 가리고 공개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성명을 공개한다는 부분도 사실 애매한 면이 있음. 공문은 한 장인데 수십장의 개인정보가 붙어있는 경우 같은데 이런 첨부문서는 비공개해야 하지 않을까함.

### 〈위원〉

저만 성명을 공개해도 문제없다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냈었는데,성명도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바꾸겠음.

### 〈위원장〉

○ 인허가 관련 기록의 공개 범위는 주신 의견과 마찬가지로 전부다 부분공개 하는 것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음.

### 〈위원〉

○ 인허가 관련 기록에 대해 기록원에 들어오는 공개 요청의 주요 사안들이 사람으로 출발하는 정보들을 찾고자 하는게 많은지. 단체명을 통해 찾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함.

### 〈간사〉

○ 여기에 포함된 기록들은 사람을 검색 포인트로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음. 백화점,시장 관련 기록은 조금 관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밖의 직업소개소 등의 기록은 열람 요청이 많지 않음.

### 〈위원장〉

- 에 번째 안건에 대해서도 기록원에서 주신 의견과 동일한 의견인 부분공개로 가결하도록 하겠음.
- ▶ 〈안건4: 공공청사 건립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심의

### 〈간사〉

- O **안건 설명** ※ 붙임 안건 참고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주셨으며, ○○○위원님은 현재 양지회관이나 공무원교육원 등이 공공청사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위원님은 비공개대상정보 중에 성명은 공개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을 주셨음.

### 〈위원장〉

○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발언해주시기 바람

### 〈위원〉

○ 양지회관이나 공무원교육원이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함.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경우 공공청사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가의 저작권 문제를 제외하면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간사〉

○ 이번 안건과 관련된 건물이 다수인데 모든 건물에 대해 현존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양지회관 및 공무원교육원은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그것이 확인이 되면 공개가 가능할 것임

#### 〈위원〉

○ 개인의 주택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에도 평면도 같은 것은 공개를 하는데, 개인의 건축물이기 때문인건지 이유가 궁금함. 공공청사 등에 대해 오래된 건물들도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간사〉

○ 평범한 배치도 정도는 공개가 가능할 것인데, 세부적인 수치가 전부 포함된 도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도면도 건축주가 아닌 경우에는 바로 열람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건축주가 허락을 해야 볼 수 있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성있는 단체가 청구해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공청사라서 다르기보다 현존하는지 여부와 공개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음

###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면도 등이 다 공개되고 있고 누구나 다 볼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건물도 비슷하지 않냐는생각이 등.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신지.

### 〈위원〉

○ 현존하지 않는 도면은 구조도, 급배수도, 세부 평면도도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 〈간사〉

O 네.

#### 〈위원〉

○ 건축도면도 저작물이어서 설계자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외국의 경우는 저작권을 인정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확인이 필요함.

#### 〈위원〉

○ 저작물 즉, 건물 등 하드웨어적인 것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것 모두 저작권이 있는 것이 맞긴 한데, 보통 계약서나 관행적으로나 건축주나 발주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저작권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건물을 설계사에게 설계하게 해서 받으면 설계사가 도면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건축주에게 가버림. 공공기관 건물은 아마도, 계약서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설계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런 경우는 오히려 특별한 경우인 것 같음. 일일이 확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음.

### 〈위원장〉

○ 다른 질문은 없으신지

### 〈위원〉

○ 다른 창작물 같은 경우에는 창작물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발주를 받아서 시행하더라도 일정범위까지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도면도 창작물로 여겨서 건축사들이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잘 모르겠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의견이 대부분 기록원의 의견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지.

### 〈위원〉

○ ○○○ 위원님이 성명 공개해도 문제없다고 하신 것 아닌지.

#### 〈위원〉

○ 보육시설 전환신고서, 매도증서, 각서, 임원명단 이런 것에 포함된 성명을 꼭 비공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음. 비공개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비공개를 해야 하는지, 30년이나 경과했는데 왜 비공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낸 의견이었으나, 다른 위원님들이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의견을 철회하겠음.

#### 〈위원〉

○ 방금 찾아보니, 특별한 건축물이 아니면 저작물성 인정이 안된다는 판시가 있는 것 같음. 하지만 모두 개별 사안 별로 판단하게 되는 것임. 설계도의 특별한 예술성,창작성을 주장하는 경우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래된 공공 건축물의 경우 개성있는 건물이 많지 않아 저작권을 주장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음.

### 〈위원장〉

- 그러면 네 번째 안건도 특별히 기록원의 의견과 다를 바가 없는 부분공개인 것 같음. 부분공개 의견으로 가결해도 될지.(일동 동의)
- 지금까지 작성한 의결서에 대해 확인을 하도록 하겠음.

### 〈위원장〉

○ 심의의결서 작성내용 확인

일련번 호	심의안건	검토의견	의결내용
2021- 3-1	농지분배 관련 지적기록의 공개 범위	○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지가사정조 서, 보상대장, 상환증서발급 등: 공개(개인 성명,주소 포함)	가결

		○ 지가증권 관계: 부분공개 ○ 개인이 제출한 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본인, 상속자 등 관 런 당사자에 한하여 공개	
2021- 3-2	국제협력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ul><li>○ 부분공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6호)</li><li>○ 단, 참여한 개인의 성명은 공개 가능</li></ul>	수정가결
2021- 3-3	인·허가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 30년 경과: 부분공개(6호) ○ 30년 미경과: 부분공개(6호,7호)	가결
2021- 3-4	공공청사 건립 관련 기록의 공개 범위	○ 부분공개(6호, 3호)	가결

- 의결서 내용에 모두 동의하시는지. (일동 동의)
- 의결서 내용 모두 동의하면 회의 종료 후 메일로 서명 받도록 하겠음
- 이상으로 2021년 제3차 기록물공개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음. 끝.

### 2021년 제3차 서울특별시 기록물공개심의회

# 회의진행순서

- 일 시 : 2021. 9. 15. (수) 14시
- 장 소 : 온라인 영상회의
- 심의 안건
  - 〈안건1〉 농지분배 관련 지적기록의 공개범위
  - 〈안건2〉 국제협력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 〈안건3〉인·허가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 〈안건4〉 공공청사 건립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 〈안건1〉

## 농지분배 관련 지적기록의 공개범위

### 기록개요

○ 개 요: 1949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와 상환 관련 기록물로, 지주의 농지와 귀속농지(일본인 소유)를 국가에서 매수·귀속하여 분배대상자(경작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생산·접수된 기록물

○ 생산시기 : 1950년 ~ 1962년 (30년경과)

○ 생산부서 : 농지과 외

○ 주요 기록 및 포함 정보

1) 소유자(지주)의 보상 관련 기록

주요 기록	설명	포함정보
	개요	지주별로 소유 농지의 내역과 사정가격이 기재된 표를 편철한 문서
지주별농지확 인일람표	포함정보	토지의 정보 및 소유자 정보(성명,주소), 사정금액, 비고 등의 정 보를 포함하고 있음
	분량	44철 (7,353건)
	개요	지주별로 소유 농지에 대한 가격을 평가한 조서로서 지주소유농 지집계카드가 첨부되어 있으며, 지가증권번호 순으로 편철되어 있음.
지가사정조서	포함정보	토지의 정보 및 소유자 정보(성명,주소), 사정금액, 보상액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분량	97철 (4,883건)
지가증권 관계	개요	농지 소유자에 대해 지가증권 발급, 재교부, 주소변경, 명의변경, 보상, 분할, 회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생산한 공문과 관련

		첨부 서류가 수록되어 있음
		업무 시뉴기 무득되어 있음 
		(지가증권 발급) 보상신청서, 보상액사정조서, 보증서, 색인목록, 조사표, 지주신고서, 지주신고집계표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음
	T-171 L	(지가증권 보상) 보상신청서, 부동산목록, 신규지가증권발급내용 표, 이유서, 지주농지확인일람표 등이 첨부되어 있음
	포함정보 	(지가증권 명의변경) 목록표, 위임장, 이유서, 인감증명원, 증명서, 지가증권명의변경신청서, 호적등본 등이 첨부되어 있음
		(지가증권 주소변경) 목록표, 보상대장, 보증서, 위임장, 인감대조 증명원, 인감차입증, 주소변경신고서 등이 첨부되어 있음
분량		지가증권발급서류 201철 (10,071건) 기타 203철 (11,605건) ※ 지가증권발급서류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 보존·서비스 중이며, 서울기록원은 이관전 촬영한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유
개요		농지개혁에서 농지를 분배당한 지주에게 그 농지의 대가로 지급할 보상의 내역을 기록한 문서. 경우에 따라 지가증권분할 및 명의변경 내역표 등이 첨부되어 있음.
보상대장	포함정보	지가증권 번호, 토지소유자 정보(성명,주소), 보상조건, 보상내역, 채무내역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분량	83철 (11,852건) ※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 보존·서비스 중이며, 서울기록 원은 이관전 촬영한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유

### 2) 경작자(수배자)의 분배 관련 기록

주요내용	설명	포함정보		
상환증서발급	개요	농지를 분배받은 경작자가 상환액 납부를 완료한 경우 발급하는 상환증서 발급 관련 문서로서 발급공문 및 상환내역표가 포함되어 있음		
	포함정보	분배토지, 상환자(경작자), 상환내역 등		
	분량	18철 989건		

## 2 공개검토

### ○ 다른 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공개 사례

#### ❖ 국가기록원

- 공개: 귀속농지상환대장, 귀속농지상환대장보조부, 분배농지상환대장, 분배농지상환대장보조부, 분배농지부는 '조상땅 찾기'와 관련하여 이미 상당부분 기록의 열람 및 사본 제공이 이루어졌으므로 공개 및 원문서비스 제공
- 부분공개(6호, 8호): 지가증권, 지가사정원부, 분배농지소유권이전, 위토 대장, 경작자별 농지일람표, 보상대장, 농지소표 등 그 외 농지개혁 관련 기록물은 개인의 신상정보 및 재산정보가 기재된 기록물로서 성명, 주소, 재난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6,8호에 따라 개인의 이름, 주소의 읍면동 이하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 경남기록원

- 공개: 상환대장은 해방 이후 농지개혁 과정에서 농지의 분배 및 상환과 관 런하여 생산되어 '조상 땅 찾기'의 일환으로 공개하고 있는 기록물로, 비공개 사유가 없으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30년 경과 기록물의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
- 부분공개/비공개: 상환대장 외의 농지개혁 관련 기록물은 경작자 및 소유 자의 성명,주소,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 ○ 검토의견

- 국가기록원 등에서 현재 공개로 제공하고 있는 기록물(상환대장 등)은 서울기록원에서는 거의 보유하지 않는 유형의 기록이며, 서울기록원에서 보

- 유하고 있는 농지개혁 관련 기록물은 현재 타 기관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성 명,주소등의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하고 있음
- 대부분의 대상 기록이 생산한지 30년을 넘어 60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토지소유·보상 등의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특별히 침해하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도 높은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2021.6.23.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의 개념('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 적용됨에 따라 공개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있음. 대부분 60년 이상 경과한 기록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가다수일 것으로 추정됨.
- 당시의 토지소유자,분배대상자 성명, 주소를 공개할 경우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이익보다, 공개를 통한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개인정보를 통한 검색·조회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권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및 재산권 침해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농지분배 업무 과정에서 관청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아닌 개인이 제출한 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등)는 본인,상속자 등 관련 당사자에 한하여 공개

### ○ 재분류 결과

기록물유형	구분	재분류의견	사유 및 근거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30년경과	공개	
지가사정조서	30년경과	공개	
지가증권관계	30년경과	부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보상대장	30년경과	공개	
상환증서발급	30년경과	공개	

### ○ 기록물 상세 비공개 대상정보

대상기록(첨부물)	비공개 대상정보
보상신청서	성명, 주소
보증서	성명, 주소
이유서	성명, 주소, 내용
위임장	성명, 주소, 내용
인감증명원	성명, 주소, 인감
호적등본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등
주소변경신고서	성명, 주소
진정서	성명, 주소, 내용

### 〈안건2〉

# 국제협력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 기록개요

○ 생산부서 : 국제교류과, 총무과, 의전과 외

○ 생산시기 : 1977년 ~ 1990년

○ 수 량 : 45권 (마이크로필름 4<del>롤</del>)

○ 주요 기록물 내용

주요내용	설명	포함정보		
자매도시 결연 관계	개요	1970~1989년에 서울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된 기록물로 자매도시 요청, 승인, 방한·방문 관련 협의사항, 규정, 공연 등의 공문과 관련 첨부 서류가 수록되어 있음		
	포함정보	첨부 서류에는 예비비 지출 요구서, 협조사항, 약력서, 관계규정, 서한, 자매결연 합의서(초안), 추진경위, 공동 선언문, 기념사, 방한 일정·계획, 공연 일정계획, 자매도시 위원 명단, 물품매입 품의 요구서, 예산조서, 내역서, 산출기초조사서, 견적서, 초청장, 소년합창단 명단 및 인적사항, 이력서, 항공운임증명서, 공적조서, 공무국외여행허가통보, 정부항공운송의뢰서, 계획서, 신문보도 스크랩, 기술협력, 회의자료, 초대 명단, 협정서, 자매도시 위원 명단 등이 수록되어 있음.		
	해당 기 <del>록물</del> 철	서울-앙카라 자매도시철 서울-브라질쌍파울로시 자매결연철 서울-호룰루 자매도시철 서울-샌프란시스코 자매도시결연철 서울-샌프란시스코 자매도시 서울-보고타 자매도시철 서울-자카르타 자매도시철 강동구-미국LA주몬테레이시 자매결연 체결 관련철 은평구-켄터베리자매결연 서울-대북자매도시철		

주요내용	설명	포함정보
국제 회의 • 대회 관계	개요	1980~1990년 국제 회의및 대회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된 기록물로 국제회의 업무의 진행 및 협조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공문과 관련 첨부 서류가 수록되어 있음
	포함정보	첨부 서류에는 서한, 참석자명단, 회의결과, 회의록, 의사록, 영수증, 청구서, 지출결의서, 물품검수조서, 공한, 세출예산배정서, 수납증, 출장 심의 자료, 출장일정표, 소요예산산출기초조사서, 공무해외출장 심의의결서, 출장계획서, 이력서, 소요예산서, 예비산출내역서, 신원조사회보, 항공운임증명서, 입급표, 귀국보고서, 약력서, 축사, 환영사, 초청 추진현황보고 등이 수록되어 있음
	해당 기록물철	파콤관계철 인구 및 도시문제 국제회의 초점 관계철 J.C관계철 국제도시연합기구(U.T.O) IULA관계철 세계대도시정상회의 세계대도시협회가입관계철 제1차수도회의연락관 세계대도시협회관계철
	개요	1984년에 시장해외방문 업무 수행 중 생산된 기록물로 <b>올림픽</b> 및 아시안게임 관련 LA 및 자카르타 방문과 관련한 공문과 관련 첨부 서류가 수록되어 있다.
시장해외방문 관계	포함정보	관련 첨부 서류에는 시장 해외방문 추진사항, 홍보자료 준비계 획, 방한요지, 항공운임증명서, 여비산출내역, 방무자 인적사항, 공무국외여행허가안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해당 기 <del>록물</del> 철	시장해외방문철(MF 2000-1082)
예규·지침	개요	1975~1985년에 예규지침 업무 수행 중 생산된 기록물로 국제 협력 업무와 관련된 <b>예규지침 공문과 관련 첨부 서류</b> 가 수록되 어 있음
	포함정보	관련 첨부 서류에는 지침, 관보, 자치법규규정 정비대상내역 및 정비지침, 예방신청공문 작성지침, 각하 말씀자료 작성지침, 외 빈차량관리규정, 정부행사 간소화 추진지침, 국외여행운영지침, 서울특별시 외빈영접규칙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해당 기 <del>록물</del> 철	예규지침철(MF 2000-1082)

### 2 공개검토

### ○ 검토의견

- 생산30년이 경과한 기록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3(30년 공개원칙)에 의거 최대한의 공개를 지향해야 함. 다만, 기록에 포함된 개인식별정보,가족관계 등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식별하여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임
- 해당 기록은 국제회의, 자매도시 체결, 시장해외방문 등 국제협력업무와 관련한 30년 경과 기록물로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비공개 사유는 소멸되어 공개 가능하다고 판단됨

### ○ 재분류 결과

기록물유형	구분	재분류 의 견	사유 및 근거
자매도시 결연관계 국제회의 관계 시장 해외방문 관계	30년경과	부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예규지침	30년경과	공개	

### ○ 상세 비공개 대상정보

기록물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합창단 인솔자·합창단원 명단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학교, 학년
합창단 임원명단	집전화번호
이력서	전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학력,이력 등)
신원조사회보	전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회보내용 등)
공무여행자료수립계획서	주소,생년월일

### 〈안건3〉

## 인 · 허가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 기록개요

○ 개요 : 협동조합, 직업소개소, 시장(백화점 등) 등의 설립,개설을 승인 허가하는 업무 또는 법인 등록관리(정관변경 등) 과정에서 생산· 접수된 기록물

○ 생산부서 : 업무분야별 소관부서(부녀복지과, 상공과, 소비자보호과 등)

○ 생산시기 : 1957년 ~ 1997년

○ 분량 : 약 22권

### 2 기록내용

### ○ 시장 승인 관계

- 1970~1985년에 시장(백화점,호텔)개설•변경 승인관계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된 기록물로 백화점 등의 개설, 승인, 명의변경, 시설기한변경 연기 등의 공문과 관련 첨부 서류가 수록되어 있음
  - 첨부 서류에는 조사보고서, 건축대지증명원, 지적도 등본, 등기부 등본, 사업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인감증명신청, 복명서, 시장개설허가신청서, 회의록, 시설배치도, 개장승인신청서, 시장시설변경신청서, 개설허가신청서, 개장신고서, 소방시설증명원, 회의록, 시장개설허가증,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 필증, 상설시장개설허가증 등이 수록되어있음
  - 해당 기록철 : 상설시장변경서(미도파)관계철, 코리아나·아리랑백화점관계 철, 호텔롯데관계철, 호텔롯데토지대장철, 유니버스백화점개설관계철, 가락 동도매시장건설, 도매시장개설허가신청 외

#### ○ 직업소개소 허가 관계

- 1989~1997년에 서울특별시 유료직업소개소 사업 허가관련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된 기록으로 관련 공문과 첨부서류가 수록되어 있음
- 첨부 서류에는 법인내역, 신원진술서, 호적등본, 병적증명(조회)원서, 병적 증명서, 경력증명서, 임대차계약서(월계계약서), 건축물대장, 신원조사처리 부, 허가증, 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건처분결과서, 주주총회 의사 록, 정관, 직원 인사기록카드, 재적증명서, 국가유공자증서, 인감증명신청, 인감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컴퓨터조회의뢰서 등이 있음.
- 해당 기록철 : ㈜제일직업소개소, 밀알강동직업소개소, 서울직업소개소 외

#### ○ 법인 정관변경 관계

- 1991~1996년에 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관련 업무 수행 중 생산된 기록 물로 정관변경 허가신청, 서류보완 등 정관 변경의 업무와 관련된 공문과 관련 첨부 서류가 수록되어 있음
- 첨부 서류에는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기부 등본, 임원명부, 인감증명신청, 설계변경사유서, 저축잔고증명서, 정관 허가신청 검토내역서, 의견서, 법인등기 등이 수록되어 있음
- 해당 기록철 : 정관변경철\_평화모자원, 정관변경철\_수궁모자원, 정관변경철 \_해방모자원 외

### ○ 협동조합설립인가 관계

- 1985~1989년에 협동조합설립인가 업무 수행 중 생산된 기록물로 협동 조합설립인가 공문과 관련 첨부 서류가 수록되어 있음
- 첨부 서류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설립취지서,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회의사록, 임원취임승낙서, 이력서, 신원증명서, 조합원명부 등이 있음
- 해당 기록철 : 강남공예품판매협동조합인가서류철, 서울고지협동조합관계 철, 고척산업용품상가협동조합관계철 외

## 3 공개검토

### ○ 관련 사례

### ❖ 재단법인 0000000000 정관변경허가서, 신정관, 개인정보를 제외한 법인설립허가증, 정관변경 신청서 등

- 개인정보를 제외한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변경허가서, 신정관은 법인의 경영상·영업 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정관변경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관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회의록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및 회의록 내 발언 자명을 제외하고 공개)(2018년 11차 정보공개심의회)

### ❖ 2017년 10월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정산비) 세부내역서, 입금 은행명 및 계좌번호

- 민간위탁금 집행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세부내역서 중 거래처명 및 은행계좌정 보(입금은행명, 계좌번호)를 제외하고 부분공개(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2018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 ○ 검토의견

- 생산30년이 경과한 기록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3(30년 공개원칙)에 의거 최대한의 공개를 지향해야 함. 다만, 기록에 포함된 개인식별정보,가족관계 등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식별하여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임
- 해당 기록은 법인,단체의 설립,사업허가 등과 관련한 기록으로서, 첨부문서 중 기본재산목록, 사업계획서, 회의록, 국세(시세)완납증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적용여부를 살펴야 할 것임
- 생산30년이 경과한 기록의 경우 정보의 내용이 현재의 경영·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7호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가 능할 것으로 판단됨
- 생산후 30년이 미경과한 경우는 공개에 따른 법인의 경영·영업상 이익 침해 여부을 사전적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안에 따라 법인등의 존속여부, 정보의 시의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 재분류 결과

기록물유형	재분류 의견		사유 및 근거
시장 승인 관계 직업소개소 허가 관계. 법인 정관변경 관계 협동조합 설립인가 관계	부분공개	30년 경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30년 미경과	제6호, 제7호

### ○ 상세 비공개 대상정보

기록물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건축대지증명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시장예정지 책정신청서	성명, 주소	
납세완납증명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건축허가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장개설기한 연기승인신청서	성명, 주소	
국가자격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이력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학력, 경력등	
신원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호주성명 및 관계, 주소, 증명사항 등	
회의록	성명	
조합원명부	성명, 주소	

### 〈안건4〉

## 공공청사 건립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 기록개요

○ 개요 : 공공청사 건립 과정에서 생산·접수된 기록물

○ 생산부서 : 업무분야별 소관부서(부녀청소년과,공무원교육원 외)

○ 생산시기 : 1964년 ~ 1990년 (30년 경과)

○ 분량 : 약 20철

### 2 기록내용

#### ○ 양지회관건립관계

- 1964년 동대문구 숭인동 55-2에 건립예정인 양지회관과 관련한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된 기록물로 지출결의, 공사설계·시행, 건립추진위원회, 공사입찰 및 계약 등의 진행 및 협조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공문과 관련 첨부 서류가 수록되어 있음
- 관련 첨부 서류에는 기성부분검사원, 준공검사원, 설계변경내역, 지출결의 서, 공사도급계약서, 착공계, 위임장, 인감증명신청서, 설계서, 도면, 결산 서, 지적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 해당 기록철 : 양지회관건립관계철

### ○ 아동회관 건립 관계

- 1976년 시립아동회관의 건립과 관련한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된 기록물로 아동회관 건립 계획·추진, 협조요청 등의 진행 및 협조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공문과 관련 첨부 서류로 이루어짐
- 관련 첨부 서류에는 토지대장등본, 건축대지증명서, 지적도, 평면도, 건립 계획서, 공사시방서, 지적도등본, 공사설계서 등이 수록되어 있음

- 해당 기록철 : 아동회관건립철

#### ○ 복지시설 건립 관계

- 1970~1990년 부녀교실, 여성복지관 건립 등의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된 기록물로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복지 시설 건립 및 (이전)설치 계획, 부지 조정, 예산 배정,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 공사 등의 업무의 진행 및 협조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공문과 관련 첨부 서류로 이루어짐
- 관련 첨부 서류에는 공사설계서, 시설비 계산서, 위치약도, 준공검사조서, 일반분양 계약서, 실태조사 계획, 초청장, 이력서, 가옥대장 등본, 기 부채납원, 기부증서, 등기촉탁승락서, 각서, 등기부등본, 건의문, 설 치계획, 부너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신축공사 설치용역, 건축 변경 안, 지출결의서, 보도자료, 건설공사도급표준계약서, 인가증, 준공계, 준공검사조서, 공사감독조서, 묘적대장, 시설공사도급표준계약서, 평 면도, 경계복원측량도, 도시계획확인원, 항측도, 현황도, 조감도, 배 치도, 감정평가서, 청구서, 동의서, 토지분할신청서, 토지대장, 교환 계약서, 재산교환승락서, 매도증서, 등기권리증, 수익사업신고필증, 사업계획서, 견적서, 보증금 납부서, 사고이월요구지침, 사고이월사업 별명세서, 건축허가신청서, 현장대리인설정계, 보육시설전환신고서, 입급의뢰명세서 등이 있음
  - 해당 기록철 : 부녀교실설치관계, 복지관건립관계철, 마포부녀복지관건립, 노원부녀복지관건립, 법인지도감독\_부녀직보, 시립여자기술원난방배관 공사철, 자매복지회관, 시립탁아원설치관계철, 자매참고철, 자매복지 화관자본보조철, 도봉부녀복지관건립(일반), 용역관계철(유아보육사업), 자매복지회관 자본보조철, 새마을유아원이관 등

### ○ 공무원교육원 청사 이전 관계

- 1974~1975년에 용산구 한남동에서 동대문 휘경동으로 청사 이전 업무수행 중 생산·접수된 기록물로 교육원 이전을 위한 계획, 업무협조, 청사건립 예정지 확보, 이전 교육원 용도폐기 등의 공문과 관련 첨부 서류로 이루어짐
- 관련 첨부 서류에는 주요사업 세출예산요구서, 교육원 이전 확장 계획, 신

축예정지 도면, 지적도등본, 토지대장등본, 임대대장 등본, 가옥대장, 건축 대지증명원, 교육원 청사 현황, 이전 예정지 조서, 업무보고 등이 있음

- 해당 기록철 : 청사관계철(한남동)

## 3 공개검토

### ○ 관련 사례

### ❖ 상도동 신상도지하차도덮개 설치 관련 2016년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 자료, 회의록, 조치계획 등

- 〈비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교통분야 심의자료(조치계획 포함) 중 설비 등 구체적인 내부구조가 포함된 평면도 (15-17p, 20p, 27-41p)는 공개시 설계자의 창의적인 노하우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테러 등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하고,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2018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 ❖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 체결일, 추정가격 또는 예정 가격, 계약 상대방의 성명, 계약 금액 및 1천만 원 이상의 월별 수의계약 내역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등에 따라 공개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의거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음(법령 해석례 11-0395)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 개(2021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 ○ 검토의견

- 해당 기록은 생산3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의3(30년 공개원칙)에 의거 최대한의 공개를 지향해야 함. 다만, 기록에 포함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식별하여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공공청사는 다중이용시설로서 건축물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등의 정보는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비공개함이 타당할 것임. 다만, 해당 건축물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공개가능할 것임
- 생산30년이 경과한 경우 건축 과정에 생산·접수된 기록에 포함된 법인·업체 관련 정보가 현재의 경영·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7호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재분류 결과

기록물유형	구분	재분류 의견	사유 및 근거
양지회관 건립 관계 복지시설 건립 관계 아동회관 건립 관계 공무원교육원 청사 이전 관계	30년 경과	부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 ○ 상세 비공개 대상정보

기록물유형	적용조항	비공개대상정보
각서, 주민등록표, 임원명단, 매도증서, 가기술자격증, 보육시설전환신고서, 국재산교환승낙서, 동의서, 승낙서 등	6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건물 도면	3호	구조도, 급배수도, 세부평면도 등